
입 법 정 보

2018-9호



목 차



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4
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	5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6
4.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	6
5.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8
6.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8
7.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	9
8.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통일부).....	10
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10
1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법무부).....	11
11.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	12
12.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
13.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3
1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부).....	14
15.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5
16.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6
17. 교육·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6
18.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17
19.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18
20.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20
21.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21
22.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21
23.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	22
2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23
2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23
26.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	24
27.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25
28.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26
29.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	27
30.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27

3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28
32.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28
3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28
34.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9
35.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	30
36.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31
37. 한식진흥법 제정(안) (농림축산식품부)	32
38.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32
39.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33
40. 저수지 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	35
41.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35
4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	36
43.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36
4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37
4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37
4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38

정부입법 예고

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 예고일자 : 2018. 5. 8.
- 마감일자 : 2018. 5. 28.

○ 「의료기기법」이 개정(법률 제15486호, 2018. 3. 13. 공포)됨에 따라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서 의료기기 부작용의 인과관계 조사·규명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과관계조사관의 자격·직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의료기기 수리업자가 허가·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성능을 경미하게 변경하여 수리할 수 있는 범위를 마련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품질책임자 교육실시기관의 지정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지정사항을 변경하고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품질책임자 교육실시기관 변경지정 근거 마련(안 제14조)

- 1) 현행 법령에 의료기기 품질책임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교육실시기관의 지정 요건이 변경되는 경우 기존 지정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이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교육실시기관의 명칭, 소재지 또는 대표자 등이 변경되는 경우 기관 지정사항을 변경하여 기관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변경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품질책임자가 기관 지정 변경사항을 손쉽게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나. 의료기기 경미한 변경 수리의 범위 등 지정(안 제47조)

- 1) 「의료기기법」 개정(법률 제15486호, 2018. 3. 13. 공포)에 따라 의료기기 수리업자는 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외관을 변경하는 등 경미한 수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
- 2) 이에, 의료기기 수리업자가 경미한 변경 수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변경 수리를 한 경우에는 그 내역을

의뢰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등 의료기기의 경미한 변경 수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다. 인과관계조사관의 자격·직무범위 등 마련(안 제61조의2 신설)

- 1) 「의료기기법」 개정(법률 제14330호, 2016. 12. 2. 공포)에 따라 한국의료기기정보원장은 인과관계조사관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고, 인과관계조사관으로 하여금 의료기기와 부작용의 인과관계를 조사·규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됨.
- 2) 이에, 의료기기 인과관계조사관의 자격 요건과 인과관계조사관이 의료기기와 부작용의 인과관계를 조사하여야 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인과관계조사관의 증표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는 등 인과관계조사관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라. 의료기기 허가증 재발급 근거 추가(안 제63조)

- 1) 현행 의료기기 허가증은 최초 의료기기 허가 시 발급된 이후 허가사항에 변경이 있어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 기존의 허가증에 변경사항을 계속 첨부하는 형식으로 관리되고 있어, 허가증에 모든 이력문서가 다 포함되고 있음. 이 경우 외국에서의 인허가를 목적으로 외국 정부에 국내 허가증 사본 등을 제출할 때 최종 허가내역 입증 등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등 업계의 어려움이 있었음.
- 2) 이에, 허가증을 못쓰게 되었거나, 제조업자 등의 의도와 관계없이 규정 변경 등으로 허가증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이외에도 외국 수출 등을 목적으로 허가증을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신 상태의 허가증으로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내 의료기기 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대외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8. 5. 8.
- 마감일자 : 2018. 6. 18.

○ 법률안 용어와 법문 표현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국민건강증진법은 그 용어 등이

한자로 표기되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률안의 용어를 원칙적으로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등 어문
규정에 따라 표기하고 어려운 한자식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
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併記)함.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 예고일자 : 2018. 5. 9.
- 마감일자 : 2018. 6. 18.

○ 식육가공업자 또는 집단급식소 영양사 및 조리사가 가공 및 조리의
편의를 위하여 냉동포장육을 해동한 상태로 공급하여 줄 것을 식육포
장처리업의 영업자에게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냉동포장육을 해동된
상태로 공급하는 것도 허용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식육가공업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영양사 및 조리사가 식육
가공품이나 음식물의 원료로 사용 할 냉동포장육을 해동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는 해당 제품에 해동과 관
련한 내용을 명시하여 해동된 상태로 공급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영업자 준수사항을 개선함.(안 별표 12)

4.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

- 예고일자 : 2018. 5. 9.
- 마감일자 : 2018. 6. 18.

○ 산림복지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 구성비율을 「양성평등
기본법」에서 정하는 규정과 부합되도록 보완하고, 산림청장 및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에게 그 권한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한편, 산림복지단지의 준공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산림복지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 위원수 개정(안 제8조)
 -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예외하도록 개정
- 나.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산림복지서비스 제공권한 신설(안 제8조의2)
 -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
- 다. 「산지관리법」의 적용 특례에서 보전산지의 범위 명확화(안 제38조)
 - 실시계획이 승인·고시된 산림복지단지의 해당 토지 중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만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보전산지로 지정된 것으로 보도록 개정
- 라. 산림복지단지 조성공사 준공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48조)
 - 산림청장은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의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마.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업무의 위탁규정 신설(안 제61조)
 -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 바. 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에 조문 추가(안 제62조)
 -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과 산림청장·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한을 위탁받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교육·훈련 전문기관 및 산림복지전문업의 대표 및 해당 종사자를 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에 추가

5.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 예고일자 : 2018. 5. 9.

• 마감일자 : 2018. 6. 18.

- 회계법인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을 추가하고,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수시보고서 작성 의무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공포(' 18.10.31.)됨에 따라 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회계법인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 추가(안 제6조)

- 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에 외부감사법 제17조에 따른 품질관리기준의 중요한 사항 등을 추가함

나. 수시보고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안 제7조)

- 외부감사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수시보고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을 정함

6.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예고일자 : 2018. 5. 9.

• 마감일자 : 2018. 6. 18.

- 현재 국가우주위원회와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는 정부 부처 당연직 위원 위주로 구성되어 민간의 참여가 제한적이므로 정책수립 과정에서 민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전문성 제고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조정하여 민간위원 참여를 확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에서 지정한 7개의 당연직 참여부처 가운데 위성개발 체계사업을 주관하고, 국가 안보와 관계된 부처인 국방부, 국가정보원은 당연직을 유지하고 나머지 부처(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기상청)는 당연직에서 제외함(안 제4조제1항 각 호 개정)

나. 국가우주위원회의 기존 당연직 기능 보완을 위해 위원장은 우주개발사업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회의 안전 또는 의견을 제출하거나 회의에 소속 직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제3항 신설)

다.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의 전체 구성인원을 21명에서 25명으로 4명 확대하여 당연직 정원과 위촉직 정원을 동수로 구성하고자 함(안 제6조 개정)

7.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8. 5. 10

• 마감일자 : 2018. 6. 19.

○ UNEP(유엔환경계획)에서는 국제적인 수은 저감을 위하여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을 2013년도에 채택하고 최근 EU 등 가입 국가들이 비준을 완료하여 국제적으로는 협약이 발효(2017.8.16.)된 상황임.

우리나라는 2014년 동 협약에 서명하고 국내법에 협약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을 개정(2016.1.27.)하였으나 수은의 수출에 관한 규정이 미비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고 조속히 국내 비준절차를 이행하고자 함.

한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개선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준 준수가 어려워 폐쇄명령을 받는 경우에 대하여 인근 주민이 해당사실을 알 수 있도록 고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배출시설 인근 주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수출시 사전승인이 필요한 물질에 ‘수은’을 추가(안 제13조제6항)

-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에 따라 취급이 제한된 ‘수은’을 수출하려는 자는 수출승인신청서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신설

나. 다이옥신 배출시설에 대한 주민 알권리 제고(안 제16조제4항)

-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하여 개선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기준 준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사용중지 또는 폐쇄를 명한 경우 이를 인근 주민에게 고지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

다. 타법 개정조문 반영(안 제5조제1항)

-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 기본계획의 심의를 받도록 한 중앙환경

정책위원회의 근거 조문이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제1항에서 제58조 제1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

8.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통일부)

- 예고일자 : 2018. 5. 10. • 마감일자 : 2018. 6. 19.
- 「통일교육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5433호, 2018. 3. 13 공포, 2018. 9. 14 시행)됨에 따라, 통일관 지정 및 변경통보 요건·절차·방법을 구체화하고, 공무원 등 통일교육 실시 방법·시기 등을 정하며,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경비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통일교육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실시할 수 있는 통일교육주간 행사내용 구체화(안 제1조의2 신설)
 -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통일교육 상호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2조 신설)
 - 다. 통일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시설·예산·인력 등 요건, 신청 절차와 방법 등을 마련(안 제5조의2, 별지 제2호의2 신설)
 -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하는 통일교육의 방법,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의3, 별지 제4호 신설)

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 예고일자 : 2018. 5. 10. • 마감일자 : 2018. 6. 19.
- 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의 용어에 대한 사회적인 오해를 없애고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신지체인을 지적장애인으로 하고, 발달장애인을 자폐성장애인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1]이 개정됨에 따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의 기준(제2조관련) 제5호의 정신지체인(精神遲滯人)을 지적장애인(知的障礙人)으로, 제6호의 발달장애인(發達障礙人)을 자폐성장애인(自閉性障礙人)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1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법무부)

• 예고일자 : 2018. 5. 10.

• 마감일자 : 2018. 6. 19.

- 최근 스토킹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초기에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스토킹이 폭행, 살인등 신체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범죄로 이어져 사회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스토킹을 범죄로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자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각종 보호절차를 마련하여 범죄 발생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스토킹이 더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여 건강한 사회 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스토킹범죄”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함(안 제2조제1호).

다. 진행 중인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스토킹범죄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즉시 현장에 나가 스토킹행위의 제지 및 향후 스토킹행위를 중단할 것을 통보,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피해자에게 잠정조치 요청 등 절차를 안내하는 등의 응급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3조).

라.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제7조제1항 각호의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안 제5조), 사법경찰관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 먼저 잠정조치(긴급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마. 판사는 원활한 조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잠정조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바.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하여금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고,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스토킹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각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함(안 제15조).

사.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 흥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 및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안 제16조 및 제18조).

11.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일자 : 2018. 5. 10.
- 마감일자 : 2018. 5. 15.

○ 동물 보호·복지 정책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동물보호·복지업무 전담조직인 동물복지정책팀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설하고 업무를 분장하는 한편, 동물 보호·복지 업무 강화와 가축 방역업무의 체계적 수행을 위해 직급을 상향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2.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18. 5. 11.
- 마감일자 : 2018. 5. 31.

○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단계 지원 대책(2018.4.5.)에 따라 공장폐쇄, 산업침체 등 지역경제가 급격히 악화된 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과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의 납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지방세의 징수유예등과 체납처분유예 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하는 특례를 새로이 정하고, 출국금지 요청의 대상이 되는 지방세 체납액 기준을 “5천만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법률 제15294호, 2017.12.26.공포, 2018.6.27.시행)됨에 따라, 출국금지 대상자 및 출국금지 해제요청 기준을 개정 법률에 부합하도록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출국금지 대상자의 기준 조정(안 제15조제1항)

- 출국금지 요청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출국금지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 중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을 “체납된 지방세가 3천만원 이상”으로 함.

나. 출국금지 해제요청 기준 조정(안 제15조제3항)

- 체납액의 납부 또는 부과결정의 취소 등에 따라 체납액이 5천만원 미만으로 된 경우에 출국금지를 해제요청하여야 한다는 규정 중 “체납액이 5천만원 미만”을 “체납된 지방세가 3천만원 미만”으로 함.

다.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징수유예기간 연장(안 제31조제4항)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사업상 심각한 손해 등을 받는 경우와 재난특별지역에서 재해를 입은 납세자 등에 대한 징수유예등의 기간 연장은 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체납처분유예기간 연장(안 제93조제1항)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사업상 심각한 손해 등을 받는 경우와 재난특별지역에서 재해를 입은 납세자 등에 대한 체납처분유예 기간 연장은 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함.

13.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18. 5. 11.
- 마감일자 : 2018. 5. 31.

-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단계 지원 대책(2018.4.5.)에 따라 공장폐쇄, 산업 침체 등으로 지역경제가 급격히 악화된 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및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지방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하는 특례를 새로이 정하려고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고용위기지역 등 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및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사업상 심각한 손해 등을 사유로 지방세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3 신설).

1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부)

- 예고일자 : 2018. 5. 11. ● 마감일자 : 2018. 6. 20.

- 지난 1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민간중심의 벤처생태계 혁신 대책’의 후속조치로, 벤처기업 확인 주체를 공공기관에서 민간 벤처 전문가로 변경하고, 혁신성 성장성에 중점을 두도록 벤처기업 확인 유형을 개편하며, 기업 규모 제한 등 벤처기업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시장변화에 민첩한 민간부문이 벤처기업 선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 권한을 민간으로 이양하고자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안 제24조의2 신설, 안 제25조제1~3항, 안 제25조의2, 안 제26조제4항, 안 제30조의2)
- 나. 벤처기업 확인 유형 중 보증 대출 유형을 대체하여 기업의 혁신성 성장성 평가를 통해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보증 대출 유형을 폐지하고 신기술 성장 유형을 신설(현행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 삭제, 안 제2조의2제1항제2호라목 신설, 안 제2조의2제2항)
- 다. 민간의 벤처투자 역량을 적극 활용하고 투자에 의한 벤처기업 확인 기회를 확대하고자, 벤처기업 확인 유형 중 벤처투자 유형의 투자자 인정 범위 확대를 위한 근거 마련(안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
- 라. 중소기업에서는 기업부설연구소 못지않게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연구개발활동 조직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이나 지식기반서비스 분야 외에 문화콘텐츠기업의 창작개발도 기업의 혁신성을 제고하는 분야 중 하나임을 감안하여 연구개발에 의한 벤처기업 확인 기회를 확대하고자, 벤처기업 확인 유형 중 연구개발

유형의 연구조직 인정범위 확대(안 제2조의2제1항제2호나목)

- 마. 벤처기업은 혁신성 성장성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업력이나 규모로 구분하는 것보다 기업의 속성으로 결정되는 것이 타당한 점을 감안하여 벤처기업 규모를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안 제2조의 2제1항제1호)
- 바. 벤처기업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보유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3조의4제2 ~ 5항 신설)
- 사. 벤처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규모가 한정되어 있는 국내시장 보다는 해외시장 진출에 중점을 두어야함에 따라 벤처기업부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 및 인력교류 등 국제협력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안 제32조의5 신설)
- 아. 벤처기업 확인 후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벤처기업 확인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25조의2제1항제5호 신설)
- 자. 이미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뿐만 아니라 새로이 보증 대출 유형으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으려고 계획했던 기업들이, 개편되는 제도에 맞추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적응기간을 두는 경과 조치를 마련(부칙 제1조 및 제2조 신설)

15.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8. 5. 11.
 - 마감일자 : 2018. 6. 20.
- 피부미용업 시설·설비기준, 영업소 소재지 변경신고 미이행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규제를 개선하고, 공중위생영업 신고시설에 대한 현장점검 기한 연장, 이·미용사 업무보조범위 및 면허신청서 서식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미용업(피부) 및 미용업(종합) 시설·설비기준 중 베드, 미용기구, 온장고 등의 구비조건을 삭제(안 제2조[별표 1])
- 나. 영업소 소재지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시

- 위반행위 차수별로 처분기준을 달리 정함(안 제19조[별표 7])
- 다. 이·미용사 업무보조범위에 ‘이용·미용사의 업무에 대한 조력’을 추가(안 제14조제3항)
- 라. 시장·군수·구청장의 공중위생업 신고시설에 대한 현장점검 기한을 연장(안 제3조제4항)
- 마. 영업신고증에 미용사 자격취득에 따른 ‘업무가능범위(일반, 피부, 손톱·발톱, 화장·분장)’를 별도로 표시(안 제3조제3항[별지 제2호 서식]) 등

16.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8. 5. 11. ● 마감일자 : 2018. 6. 20.
- 공중위생영업의 시설·설비 확인, 위생지도 등의 수행을 위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 있는 ‘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기준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기준 중 공중위생 종사경력 관련 사항을 완화(안 제8조제1항제4호)

17. 교육·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8. 5. 11. ● 마감일자 : 2018. 5. 31.
- 사회관계장관회의의 활성화를 통해 사회정책의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효과성 및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에 중장기 사회정책전략 수립 및 사회정책 조사·분석을 사회관계장관회의 협의·조정 사항에 추가하고 사회정책포럼, 사회정책민관협력망, 사회정책지원센터, 사회정책자문위원회 등 인프라 구축을 명시
- 주요내용
 - 가. 사회관계장관회의의 활성화 지원을 위한 근거 신설 (안 제1조 개정)
 - 나. 사회관계장관회의의 협의·조정 사항에 중장기 사회정책 전략 수립과 사회정책 조사·분석 추가 (안 제2조 개정)

다. 개최시기를 “매월 넷째 주 금요일”에서 “금요일”로 조정
(안 제3조 개정)

라. 사회정책지원센터, 사회정책포럼, 사회정책민관협력망, 사회정책
자문위원회 등 지원 인프라 구축 관련 조문 신설 (안 제10조 개정)

마. 사전실무협의 및 조정 등 실무조정회의 논의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의장은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이 담당 (안 제11조 개정)

바. 운영세칙에 실무조정회의의 구성 및 운영 부분 삭제 (안 제12조 제정)

18.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 예고일자 : 2018. 5. 14.

● 마감일자 : 2018. 6. 25.

○ 목재등급평가사 제도의 시행을 담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
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391호, 2018.02.21. 공포, 2018.08.22. 시행)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조항과 그 동안 시행과정에서
일부 시행 과정상 미비점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목재등급평가사의 등록절차(안 제14조의2)

- 목재등급평가사로 등록하려는 경우 한국임업진흥원장에게 등록
하도록하고, 한국임업진흥원장은 등록증을 발급하고 등록 대장을
작성·관리 하도록 함

나.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신청서” 및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 결과통지서” 서식변경(별지 제19조, 제20호 서식)

- 자가소비를 위해 수입하는 목재제품은 목재생산업 등록이 불요
하나(법제처 유권해석)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신청서 및 결과
통지서에 목재생산업 등록번호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어 수정
- 검사결과를 신청자가 합격 여부를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수정

19.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 예고일자 : 2018. 5. 14.
- 마감일자 : 2018. 6. 25.

○ 목재등급평가사 제도 시행, 불법·불량제품의 회수 근거 마련, 검사기관의 업무정지·지정취소 및 통관·보관상태의 품질표시 강화 등을 담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391호, 2018.02.21. 공포, 2018.08.2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의 행정처분 절차 마련(안 제17조제3항 및 제4항)
 -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과 “폐기명령을 받은 자”의 법 인용 오류(법 제17조제3항 → 법 제17조 제4항) 수정
 - 불법·부정한 목재제품에 대한 행정처분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규정 마련
- 나. 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직무·기준 마련(안 제18조의2, 제18조의3)
 - 목재등급평가사가 규격·품질 검사를 할 수 있는 검사자로 개정(법 제20조제2항제5호)됨에 따라 법 제19조의4에서 위임한 자격기준과 직무 및 자격의 취소 등에 관한 세부내용 마련
- 다. 법 개정에 따른 검사기관 삭제 및 인용문구 정리(안 제19조제3항, 제4항, 제8항, 제10항, 제11항, 제20조제1항)
 - 제19조제3항에 의한 검사기관이 법 제20조제2항에 명시됨에 따라 제19조제3항을 삭제하고 이의 인용문구 수정
- 라. 검사기관의 업무정지 및 지정·인정 취소기준 마련(안 제19조제12항)
 - 법 제20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법 제10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검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및 지정·인정의 취소에 대한 세부 기준마련
- 마. 목재등급평가사 검사 제품 및 항목 설정(안 제19조제13항 및 제14항, 제20조제1항제2호)
 - 법 제20조제2항제5호의 신설에 . . .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목재등급 평가사가 검사할 수 있는 목재제품 및 검사항목(제13항)을 정하고, 검사신청서의 작성, 처리기간 및 검사 유효기간 등에 대

한 기준(제14항)을 정하며, 자체검사공장의 지정기준(제20조제1항 제2호)을 마련

바.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 문구의 명확성(안 제21조)

-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 을 분명히 하기 위해 관련 인용 조항 추가

사. 검사결과의 표시 현행화(안 제22조제1항제3호, 제4호, 제5호)

- 규격·품질 표시 내용 중 “검사기관의 명칭 및 검사일” 과 “유효기간” 이 불필요하고 현실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삭제하고, “제조(생산)일” 을 표시

아. 회수대상 및 절차의 기준 마련(안 제22조의2)

- 법 제22조제4항 및 제5항이 신설되어 이에 대한 회수대상 및 절차 등의 기준 마련

자. 전문인력 양성기관 취소 및 시정명령 기준 마련(안 제27조제5항)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취소 및 시정명령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어 이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위임됨에 따라 세부 기준 마련

차. 권한의 위임·위탁(안 제32조)

- 목재생산업 등록 취소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으나(법 제26조 제1항) 취소를 위한 청문(법 제39조제4호)은 산림청장에게 있어 시·도지사에게 위임 필요(제1항제2호)

-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회수명령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목재제품의 수거·조사·검사 등을 담당(제32조제2항제3호)하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제2항제3호의 2)

- 전문성이 요구되는 검사기관의 지정·인정, 안전성평가 기준, 자체검사 공장의 세부 지정기준과 법 개정에 따른 검사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 정지, 이를 위한 청문을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위임(제3항제3호부터 제5호)

- 법 제19조의4 개정에 따른 목재등급평가사의 등록 및 취소를 한국임업진흥원장에게 위임(제5항제3호의2)

20.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일자 : 2018. 5. 14.
- 마감일자 : 2018. 6. 25.
- 「농약관리법」 개정(법률 제14980호, ' 17.10.31.공포, ' 18.11.1.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일부 제도개선 내용 반영
- 주요내용
 - 가. 농약 재등록 신청 제출서류 간소화(안 제16조제1항제1호 개정)
 - 농약품목 재등록 시 농약품목 변경등록의 경우처럼 이화학적 분석 성적서를 자체검사성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
 - 나. 농진청장이 농약등의 기존 표시사항 이외에 필요할 경우 추가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23조제1항제13호 신설)
 - 기존 표시사항 외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농촌진흥청 고시(농약, 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표시기준)에서 표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
 - 다. 농약등 가격표시제 세부규정 마련(안 제23조제3항 신설)
 - 농약등을 판매하는 자는 가격을 일반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하고, 세부적 방법은 농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
 - 라. 농약 판매관리인 전문성 제고(안 별표 1 개정)
 - 행정 국공립기관 등 경력자의 농약 판매관리인의 자격요건을 농약등 또는 병해충 방제의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요하도록 보완
 - 마. 농약업자 지위승계, 품목 등록신청 등의 절차 보완(안 별지 제10호, 제14호 및 제22호서식 개정)
 - 1) 농약업자 지위승계 신고 시 확인절차 보완(안 별지 제10호 서식 뒤쪽 신설)
 - 행정처분을 받은 농약 제조업자가 사업을 이전할 경우 승계자가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행정처분 사실을 명기하도록 규정
 - 2) 농약품목 등록신청서 기재 유의사항 명확화(안 별지 제14호 서식 뒤쪽 개정)
 - 농약품목 등록신청서의 '원제(원료)공급처' 기재사항을 농약관리법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등록된 '원제의 제조장 소

재지 ‘로 명확화

3) 원제 등록증 기재내용 명확화(안 별지 제22호 서식 개정)

- 원제 등록증에 ‘등록자’로 기재한 것을 원제 등록신청서 기재 내용과 동일하게 ‘법인명(상호명)’으로 함

바. 법령 오류사항 정정(안 제6조 개정)

- 제6조는 법 제3조제4항을 근거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법 제3조제5항이 근거조항이므로 입법상 오류 정정

21.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8. 5. 15. • 마감일자 : 2018. 6. 25.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신청 기관”에 관세청장을 추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중 신청기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시·도지사”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시·도지사·관세청장”으로 개정

22.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8. 5. 15. • 마감일자 : 2018. 6. 25.
- 식염은 대부분의 식품 및 가공식품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나, 첨가 비율이 낮아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음. 그러나 식염은 국산과 외국산의 단가 차이가 큰 품목으로 대량 소비처에서 저품질의 외국산 천일염을 사용하여 농수산물 가공품을 제조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무가 없어 국민들이 해당 식품에 포함된 식염의 원산지를 모르고 섭취하는 경우 빈번. 이에 식염이 대량으로 사용되는 김치류 및 절임류 가공품의 식염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내 천일염 산업을 보호하려는 것임.

그밖에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최고 금액을 상향(200만원 →1000만원)하고, 기타 법률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김치류, 절임류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특례 신설(안 제3조제2항 제1의2호 신설)

- 농수산물 가공품은 원료의 배합비율이 높은 순서로 최대 3순위까지의 원료의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김치류 및 절임류 가공품은 원료 배합순위 2순위까지와 식염을, 김치류 중 고춧가루를 사용하는 품목은 배합순위 2순위까지와 고춧가루 및 식염을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특례를 신설함

나. 신고 포상금 최고 금액 상향(안 제8조제1항 개정)

-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 포상금 최고 금액을 현행 2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함

다. 기타 법률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안 제5조의2,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3 개정)

- 과징금 부과, 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 위반에 대한 처분 및 공표, 교육 등의 실시 주체에 관세청장 추가

23.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

- 예고일자 : 2018. 5. 15.
- 마감일자 : 2018. 6. 25.

○ 창원터널 인근 화물차 화재사고(' 17.11.02)와 관련하여 용기에 수납된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으로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자는 자격을 갖추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탱크 안전성능을 시험하는 자에 대한 출입검사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등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용기에 수납된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으로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자는 일정 자격을 갖추어 주기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함.

(안 제20조제1항 신설, 제28조제1항)

나. 소방공무원 등에게 위험물 운반자의 자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탱크시험자 대상으로 한 출입·검사 내용을 명확화 함.(안 제22조제2항 및 제5항)

다. 용기에 수납된 위험물을 일정수량 이상으로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자가 자격을 갖추지 않는 경우 운반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함.(안 제37조제4호 신설)

2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8. 5. 15.

• 마감일자 : 2018. 6. 25.

○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명칭을 검사대상기기관리자로 변경하도록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 개정(‘18.4.17 공포, ’ 18.7.18 시행)됨에 따라, 조종자의 명칭을 검사대상기기관리자로 변경하고, 검사대상기기 유효기간 완화 및 현장에 적용되는 검사 기준을 명확히 하여 검사대상기기 검사수검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검사대상기기조종자 명칭을 검사대상기기관리자로 변경

나. 검사대상기기 검사 적용기준을 한국산업표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 (안 제31조의9)

다. 검사대상기기 중 압력용기 안전검사의 유효기간 연장심사 신청조건을 완화 (안 별표3의5)

2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8. 5. 15.

• 마감일자 : 2018. 6. 25.

○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명칭을 검사대상기기관리자로 변경하도록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 개정(‘18.4.17 공포, ’ 18.7.18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된 조종자 명칭을 관리자로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검사대상기기조종자 명칭을 검사대상기기관리자로 변경 (안 제51조

26.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일자 : 2018. 5. 15.
- 마감일자 : 2018. 6. 25.

- 살충제 계란사건('17.8)을 계기로 국민들의 신뢰도를 제고 할 수 있도록 친환경 농식품 인증제도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인증기관에 대한 평가를 통해 부실기관에 대해서 퇴출시킬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상습적 인증기준 등을 위반 하는 인증농가에 대해 행정처분강화 및 과징금 부과 제도를 마련하며,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에 관한 정의를 토양·생태 등 환경보존 중심으로 수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의 정의 개정(안 제2조)

- 1) 친환경농어업의 목적인 건강한 생태계 유지, 생물다양성 증진 등 농업 환경보존 중심으로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 정의 재설정

나. 유기식품등의 인증 신청 제한 조건 추가(안 제20조)

-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자, 인증취소 처분을 3번 받은 자에 대해 인증을 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

- 2) 인증사업자가 동일 인증기관에 연속 인증 신청 횟수 제한

다. 인증심사원의 자격 정지 조건 추가(안 제26조의2)

-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증 및 재심사 등의 절차 및 방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 2) 인증업무를 인증기관의 임원에게 대신하게 한 경우 등

라. 인증기관 임직원의 결격사유 조건 추가 및 벌금 기준 구체화(안 제26조의3)

- 1) 인증심사원의 인증업무 등을 대신해 준 인증기관의 임원이나 인증업무를 대행하게 맡긴 사람
- 2) 임원 결격사유에서 소액 벌금은 제외되게 100만원 이상의 형으로 개정

마. 인증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처분 조건 추가(안 제29조)

- 1) 인증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 3회 연속 ‘미흡’ 평가를 받은 인증기관은 지정취소

바. 부적합 판정 인증품 및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재검사 제도 신설(안 제31조, 제49조)

- 1) 검사를 받아 부적합 판정이 나왔을 때 재검사를 받을 수 있는 근거 및 기준 마련

사. 친환경인증 받은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에만 ‘친환경’ 문구 등 표시 사용을 허용하는 근거마련(안 제54조의2)

- 1) 친환경농식품에 대한 국민의 이용 혼란·피해 방지와 신뢰제고를 위해 친환경 인증 받은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에만 ‘친환경’ 문구 사용 허용

아. 반복적 인증 취소자의 판매금액에 대해 과징금, 인증정보를 동의 없이 공개 시 벌금 등 벌칙, 분석자료 등 미보관 시 과태료 등 부과(안 제60조, 제62조의2, 제62조)

- 1) 인증심사원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인증관련 개인정보 등을 유출할 경우 벌금 등 벌칙 부과(안 제60조)
- 2) 3년간 2회 이상 인증취소를 받은 자에 대해 판매금액의 5배 이하 과징금 부과(안 제60조의2)
- 3) 시험분석자료 미보관, 인증결과 거짓보고 등에 과태료 부과(안 제62조)

27.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일자 : 2018. 5. 15.
- 마감일자 : 2018. 6. 26.

○ 농어촌민박 서비스의 숙박 및 식품위생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히 규정하여 농어촌 민박사업의 목적·취지를 제고하는 한편, 농어촌민박 서비스의 질 향상을 통한 소비자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숙박위생기준 구체화 및 명확화

-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숙박위생기준(객실, 접객대, 복도,

화장실 등 청결유지, 침구류 청결관리 등)이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소비자의 불만이 발생하고 있는 바, 숙박시설(객실, 접객대등)과 침구류(요·이불·베개 등 침구의 보와 수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위생관리 방법(숙박시설 매월 1회 소독, 침구류는 숙박자 1인이 사용할 때마다 세탁)을 구체적이고 명확히 규정함

나. 식품위생기준 명확화 및 객실에 비치하는 먹는 물의 기준 신설

- 식품위생기준이 적용되는 주방도구 및 살균방식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객실에 물은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먹기에 적합한 물을 비치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되도록 기준을 신설

29.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18. 5. 16.
- 마감일자 : 2018. 6. 5.

○ 11.15 지진 피해 수습 복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풍수해 위주의 재난 복구지원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자연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 확대, 공공기능을 수행하는 사설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학교시설 피해 복구 지원 체계 등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진 등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하여 소파피해자 지원대상 개선, 부상자 지원기준 완화,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대상 확대 등 피해자 지원체계 개선

- 지진으로 소파피해를 입은 주택의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을 주택 수선 의무가 있는 소유자로 조정하고 주택 피해 판단 세부기준 마련
- 자연재난으로 부상을 입은 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하여 부상자 지원 기준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장해등급 7등급에서 14등급으로 완화
-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지원 대상에 주택의 유실 전파 반파 피해자 추가

나. 학교시설 복구 지원 대상을 유치원까지 확대하고, 사립대학을 제외한 사립학교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 등 복구비 부담률 조정

- 다. 공공기능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에서 운영하는 사설 사회복지시설의 피해 복구 지원 대상 추가
- 라.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된 하천 친수시설을 복구 지원 대상 추가
- 마. 사유시설 피해 신고기간 연장 시 시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승인을 받도록하고, 시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승인 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자연재난 피해 신고서 서식에 주거형태를 표시토록 개정

29.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18. 5. 16.
- 마감일자 : 2018. 6. 25.
- 급경사지의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점검, 재해위험도평가 등의 업무를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3호의 “방재관리대책대행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관련 기술개발 및 연구, 정보공유 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급경사지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0.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8. 5. 16.
- 마감일자 : 2018. 6. 25.
- 장애인보장구의 급여기준 및 절차를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정비하고, 수면무호흡증 환자를 대상으로 양압기 대여료 및 소모품비를 의료급여로 지원함으로써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요양비 지급대상에 의사 처방에 따라 양압기를 사용하는 경우 추가 (안 제24조제1항제7호, 제2항 제7호, 제3항제6호, 별지 제12호의7서식)
 - 나. 장애인보장구 지원절차, 급여기준 정비 및 용어 단순화(안 제25조, 별표2,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4호의2서식, 별지 제14호의3서식)

3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8. 5. 16. ● 마감일자 : 2018. 5. 21.
-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변경신고 및 폐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변경신고 등의 미준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안 제33조 및 별표 3)

3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8. 5. 16. ● 마감일자 : 2018. 6. 29.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등 실태조사,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공표 등에 관한 내용이 신설(법률 제15446호, 2018.3.13. 공포, 2018.9.14. 시행) 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하위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등 실태조사 등에 대한 세부방법 및 절차 등 신설(안 제1조의2 신설)
 - 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공표방법 등에 대한 세부내용 신설(안 제3조의2 신설)

3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5. 16. ● 마감일자 : 2018. 6. 25.
- 서민 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 ('18.4.24)에 따라 개인 보증의 보증한도를 상품별로 분리운영하고, 주택연금의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인출한도 확대 및 실거주 요건을 완화하고, 임대사업자보증의

보증한도를 확대하는 등 관련제도를 개선하기 위함임

○ 주요내용

가.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인출한도 확대(안 제3조의2제1항 제3호나목)

- 고령차주의 주택담보대출 상환부담을 경감하고, 주택연금 수급을 통한 생활안정 및 주거안정 필요성을 감안하여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인출한도를 기존 대출한도의 70%에서 90%로 확대함

나. 개인보증 보증한도 확대(안 제28조제2항제1호)

- 서민의 주거안정 지원책인 전세자금보증 이용이 분양 등을 통한 내집마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동일인당 3억원인 보증한도를 보증종류별(전세자금, 중도금) 각 3억원으로 분리 운영함

다. 매입임대사업자 보증한도 확대(안 제28조제2항제2호)

- 공공임대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임대사업자보증의 보증한도를 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

라. 주택연금의 실거주 요건 완화(안 제28조의2제2항제3호다목 및 제28조의5제2호)

- 주택연금 가입고객이 입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담보주택에 거주할 수 없는 경우 주민등록 전출 및 전부 임대를 허용함

34.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예고일자 : 2018. 5. 16.
- 마감일자 : 2018. 6. 26.

○ 인터넷중독예방교육 실시결과를 매년 점검하고, 점검결과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국가기관등이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할 대상이 기존 웹 사이트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로 확대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성 품질인증도 할 수 있도록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369호, 2018. 2. 21. 공포, '18. 8. 22. 시행, 단 제32조의2, 제32조

의4, 제32조의5의 개정 규정은 ' 19. 2. 22. 시행)됨에 따라,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에 관한 사항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인터넷중독예방교육 실시결과 제출(매년 2월말일), 교육실시 결과 점검 및 부진기관 대상 관리자 특별교육 신설(안 제30조의7)
- 나. '웹사이트'를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로 개정(안 제31조)하고, '웹접근성'을 '웹접근성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접근성'으로 개정함(안제31조, 제31조의2 내지 제31조의 4, 제31조의8, [별표 5])

35.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

- 예고일자 : 2018. 5. 17.
- 마감일자 : 2018. 6. 26.

- 수도사업자의 수도사업 운영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수도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내용에 '수도사업 및 수도시설 운용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가뭄 등 어려워지는 물 공급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수도사업의 경영원칙에 지자체 물 자급률 제고를 위한 노력을 포함하였음. 일반 수도사업자로 하여금 수도시설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하여 에너지 절감 방안들을 이행토록 하는 한편, 상수도관망 시설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게 하여 유수율을 제고하고 수질오염을 방지하고자 함.

「수도법」 제24조의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 응시 관련 결격 사유 중 일부에 대하여 헌법 불합치성이 제기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일반수도사업자인 지자체가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하여 수질기준 및 검사주기 강화와 전담인력 배치 등을 통해 효과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음.

수도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에 수도시설의 장래 신설 및 증설비용이 포함되어있는 당초 입법취지를 명확히 하고, 원인자부담금 및 수도요금을 미납하는 경우에 대한 연체금 부과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수도요금 감면 대상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자를 추가

하여, 지자체가 감면대상을 정책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고자 함.

이와 함께, 수도시설 기술진단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진단을 수행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음.

○ 주요내용

가. 수도시설의 효율적 운용 강화(안 제4조)

나. 지자체의 물자급률 제고노력의무 등을 경영원칙에 신설(안 제12조)

다. 검사기관의 재지정, 변경지정, 지정취소 근거 마련(안 제14조의7 8·9)

라. 수도사업자의 에너지 자립화 근거 마련(안 제21조)

마. 상수도관망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강화(안 제21조의2)

바. 수도사업 위탁 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사전 반영(안 제23조)

사.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 및 관리규정 강화(안 제55조)

아. 수도요금 및 원인자부담금 강제 징수 방법 규정(안 제68조)

자. 수도시설 기술진단에 대한 준수사항 및 진단결과에 대한 평가 규정 신설(안 제74조, 제74조의2)

차. 수돗물 인식 제고 등을 위한 조례 제정 및 관련 민간단체·기구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안 제21조, 제75조)

36.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8. 5. 17.

● 마감일자 : 2018. 6. 26.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8. 4. 17, 법률 제15580호)되어 영업의 종합적 외관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단계에서 취득한 타인의 아이디어를 그 제공목적에 반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신설하고 그 행위의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특허청장 등에게 행정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위반행위인 것으로 인정되면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를 대통령령에 반영하고, 부정경쟁행위를 조사하는데 필요한 조사방법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7. 한식진흥법 제정(안)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일자 : 2018. 5. 17.
- 마감일자 : 2018. 6. 26.
- 한식 및 한식산업의 진흥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한식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한식 및 한식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한식(韓食), 한식산업, 한식사업자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는 한식 진흥 기반의 조성하고 한식의 국내외 확산을 위해 관련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함
 - 다. 한식 진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한식산업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 및 개발의 촉진, 한식정보체계를 구축함(안 제5조에서 제7조)
 - 라. 한식의 국내외 확산을 위해 국제교류 및 협력의 촉진, 한식의 홍보, 한식의 발굴·복원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에서 제10조)
 -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은 한식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제도와 사업을 운영(실시)할 수 있도록 함
 - 마.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과 우수 한식당 지정 근거 마련(안 제11조, 제15조)
 - 바. 한식진흥 전문기관으로 한식진흥원 근거 규정도 마련(안 제16조)
 - 사. 한식관광 활성화, 한식과 농어업의 연계, 한식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에서 제14조)

38.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5. 17.
- 마감일자 : 2018. 6. 27.
- 동별 대표자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5454호, 2018.3.13. 공포, 2018.9.14. 시행)됨에 따라 그 시

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동별 대표자에 대한 범죄경력 확인을 위한 별지 서식 보완 등
(안 제5조,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 1) 동별 대표자 후보자 이외에 이미 선출된 동별 대표자도 범죄경력 조회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종전 동별 대표자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확인을 위한 별지 서식을 동별 대표자의 경우에도 사용 할 수 있도록 함.

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중 증축에 증설을 추가(안 제15조 제3항 및 제5항)

- 1)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과 관련하여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나 설비의 규모나 면적을 증가시키는 것을 모두 증축으로 표현하는 것은 해석상 혼동소지가 있으므로 증설 개념을 추가하여 증축은 건축물에, 증설은 구조물이나 설비에 적용하도록 함.

39.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5. 17.
- 마감일자 : 2018. 6. 27.

- 동별 대표자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퇴임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게 매년 실시하고 있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 교육을 입주자등도 받을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5454호, 2018.3.13. 공포, 2018.9.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의 임기에 대한 중임제한을 완화하며,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완화하는 등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임기의 중임제한 완화(안 제13조제3항)

- 1) 중임제한으로 동별 대표자 선출이 어려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이 안되거나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게 되어 정상적 운영이 곤란해짐에 따라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단지에 제한적으로 완화하고 있는 중임제한을 모든 공동주택으로 확대하여 완화하도록 함.

나. 범죄경력 조회 대상에 동별 대표자를 추가(안 제17조)

- 1) 동별 대표자 후보자 이외에 이미 선출된 동별 대표자도 범죄경력 조회 대상에 포함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범죄경력 조회 대상에도 동별 대표자를 추가하도록 함.

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 교육대상 확대(안 제18조)

- 1)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게 매년 실시하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 교육을 입주자등도 받을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교육의 방법, 비용 부담 등의 적용 대상에도 입주자등을 포함하도록 함.

라. 행위허가·신고 기준 중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 허용 확대(안 별표 3 제1호나목·다목)

- 1) 주민공동시설 중 입주민 활용도가 낮은 경우에는 다른 주민공동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 대상을 확대하고, 용도변경을 위해 받아야 하는 동의비율을 현행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에서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으로 완화하여 사용자의 의견도 반영되도록 함.

마. 행위허가·신고 기준 중 대수선 요건 완화(안 별표 3 제2호가목·다목)

- 1) 대수선을 위해 받아야 하는 동의비율이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동의 입주자 3분의 2 이상이고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이던 것을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수선의 경우에는 각각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도록 함.

바. 행위허가·신고 기준 중 비내력벽 철거 요건 완화(안 별표 3 제5호나목)

- 1) 비내력벽 철거를 위해 받아야 하는 동의비율이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이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등의 2분의 1 이상이던 것을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경우에도 입주자등의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도록 함.

사. 행위허가·신고 기준 중 증축의 개념에 증설을 추가(안 별표 3 제6호)

- 1) 행위허가·신고 기준 중 증축의 개념이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나 설비의 규모나 면적을 증가시키는 것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증설 개념을 추가하여 증축은 건축물에, 증설은 구조물이나 설비에 적용하도록 함.

40. 저수지 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18. 5. 18.

• 마감일자 : 2018. 6. 27.

- 저수지·댐의 붕괴 등으로 인한 피해경감을 위한 비상대처계획수립에 관한 규정이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하고 있어 법률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고, 비상대처계획에 관한 심의 규정이 없어 계획의 적정성 판단 없이 수립·시행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수지·댐 비상대처계획수립에 관한 근거 규정을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으로 이관하여 법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관리주체가 수립하는 비상대처계획에 대해 중앙 또는 시·도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비상대처계획 수립 기반을 마련하고, 법률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하고자 하는 것임

41.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 예고일자 : 2018. 5. 18.

• 마감일자 : 2018. 6. 27.

-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필수연계기관에 보호관찰소를 추가하고, 필수연계기관의 협력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 2017.12.22.) 발표에 따라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또한 청소년자립지원관 시설기준의 일부를 선택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하여 청소년에게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보호관찰소를 필수연계기관*에 추가(안 제4조)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건소,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지방고용노동청 등

나. 실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근거 마련(안 제5조)

다.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자립지원관)의 설치·운영 기준 개선(안 제17조)

4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

- 예고일자 : 2018. 5. 18.
- 마감일자 : 2018. 6. 29.

- 현지실사를 고의적으로 방해 또는 기피하는 해외제조업소에 대해서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등록되지 않은 해외작업장에 대한 현지실사 근거를 마련하는 등 수출국 현지에서부터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현지실사를 방해·기피하는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제재근거 마련(안 제6조제2항)

1) 해외제조업소의 현지실사를 방해 또는 기피하는 제조업소에 대해서도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나. 해외작업장 등록 시 현지실사 근거 규정 명확화(안 제12조제2항)

1) 등록되지 않은 해외작업장에 대해서도 현지실사 할 수 있도록 개정

다. 수출식품등 안전성 지원범위 명확화(안 제38조제4항)

1) 국내 식품 안전관리 제도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수출제조업소 및 수출작업장의 해외 등록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

43.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8. 5. 18.
- 마감일자 : 2018. 6. 27.

-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 및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관세법 제90조 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관세 감면대상으로 운영

중인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서 전기스팀보일러, 가스터빈의 로터 등 41개 품목을 제외하고, 다이부착기, 저온 필터 막힘점 시험기, 전자 스핀 공명측정기 등 29개 품목을 추가하여 총 121개 품목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4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5. 18. ● 마감일자 : 2018. 6. 27.
-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안, 상생협약 체결 주체를 정의하는 내용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5317호, 2017. 12. 26. 공포, 2018. 6. 27.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법 제7조의2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과 국토교통부 제1차관으로 하고,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정부위원 소속 부처의 고위공무원 등 30명 내외의 실무위원으로 구성 (안 제7조의3)
 - 나. (상생협약의 체결) 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란 주민 또는 주민협의회, 상가건물의 임대인, 상가건물의 임차인, 해당 지자체의 장을 말함 (안 제33조의2)

4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5. 18. ● 마감일자 : 2018. 6. 29.
-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화물 운송사업자는 적재화물이 이탈되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할 의무가 있으나, 운송하는 화물이 다양하여 화물 운송사업자가 화물의 특성별로 적절한 고정방법을 알기 곤란하기에 구체적인 적재물 이탈방지 기준을 제시하고, 화물운송시장 내 지나친 차량의 과잉공급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에서 친환경 화물차 허가

범위를 한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며, 운행기록계를 정상 작동하지 않고 운행하는 운송사업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대해 자격유지검사를 도입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강화를 추진하는 한편, 자가용 사용신고 관할 명확화·허가 서류 조건 완화 등을 포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친환경 차량 허가대상 범위 규정(안 제14조의2 신설)

- 1) 택배 등 생활물류 발전에 따라 1.5톤 미만 화물자동차에 한하여 신규허가를 허용하도록 규정함.

나.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 도입(안 제18조의2 개정)

- 1) 65세 이상 70세 미만 고령운전자에 대해 3년 주기로 자격유지검사를 도입하되, 70세 이상인 경우 1년 주기로 검사주기를 단계적 감축함.

다.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 마련(안 제21조의7, 별표1의3 신설)

- 1) 적재화물 이탈방지를 위해서는 폐쇄형 적재함을 설치하거나, 폐쇄형 적재함 미설치 시 일정 기준에 따라 화물을 고정하도록 기준을 마련 함.

라. 운행기록계 미작동 시 처벌 강화(안 별표2, 별표6 개정)

- 1) 운행기록계 장착 의무가 있는 3.5톤 이상 화물자동차의 운행기록계 미작동 시 운송사업자의 운행 정지 처분을 강화함.

4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5. 18.
- 마감일자 : 2018. 6. 29.

- 택배시장 성장과 함께 택배기사 처우 및 도서지역 추가요금 문제 등 사회분쟁이 발생하여 택배요금 및 기사 수수료에 대한 투명성 제고르 위해 택배에 신고요금제를 도입하고, 직영 및 양도금지조건으로 친환경 화물차의 신규허가가 이루어질 계획으로 화물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허가조건 준수를 유도할 수 있는 합리적인 처벌기준을 마련하며, 운송사업자의 적재화물 이탈 방지 의무가 실제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아

창원터널 사고 등 대형사고가 지속적으로 유발되므로 적재불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벌칙을 강화하는 한편, 운송사업자에게 행정처분 전에 시정기회를 주고자 행정청이 운송사업자에게 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택배 신고요금제 도입(시행령 제4조제3호 신설)

- 1) 현행 구난차 및 컨테이너 차량에 도입 중인 신고요금제를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운송사업자의 경우에도 도입.

나. 개선명령 범위 확대(시행령 제4조의2 신설)

- 1) 운송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전 시정기회 부여를 위해 개선명령 가능 규정을 확대 도입.

다. 친환경 화물차 허가조건 위반 시 처분기준 마련(시행령 별표1 개정)

- 1) 친환경 화물차로 화물 운송사업허가를 득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그 차량이나 경영을 위탁한 경우, 사업 전부정지 및 3차 위반 시 허가취소하도록 행정처분 규정 신설.

라. 적재화물 이탈 시 운송사업자 벌칙 강화(시행령 별표1, 별표2, 별표4 개정)

- 1) 적재화물 이탈 시 처벌을 2배이상 강화하여 최대 감차처분 하되, 폐쇄형 적재함 설치 차량은 처벌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폐쇄형 적재함 설치를 장려.